

July 18, 2013

개정 자본시장법 소개 – (6) 상장회사의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이 2013년 5월 28일자로 공포되었는바,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를 리걸 업데이트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상장회사의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소개된 개정 사항들은 개정 자본시장법(이하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3년 8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1.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관련 개정 (개정법 제152조의2 신설, 제153조)

개정법은 현행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즉,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권유를 하는 경우 그 발행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발행인은 발행인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 신설로 발행인의 업무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특히 발행인이 아닌 자는 일부 주주, 일부 의안을 대상으로만 위임장권유를 하는 것이 가능하여 통상적인 발행인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경우와는 위임장 송부 업무 등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은 동 업무처리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은 상장주권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던 것을 의결권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여 의결권권유자의 실질적인 권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위 2일의 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2. 예탁결제원의 Shadow Voting 제도 2015년부터 폐지 (현행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4항 및 제5항 삭제)

개정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중립

적 의결권 행사제도(shadow voting)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반대의 비율 대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 예탁원의 의결권대리행사 내용을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고, 만일 실질주주가 동 통지를 받고도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의 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이를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족수 충족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기능 강화 등 (개정법 제165조의4)

개정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반면, 개정법에서는 합병 등의 경우에 있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6항에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합병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이 특정되던 방식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금액으로 합병가액이 특정된 반면 개정법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정법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종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한 방법을 변경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되,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일정한 회사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개정법 제165조의5)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개정법은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반면, 물적분할이나 인적분할 등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써 일정한 유형의 단순분할(인적분할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비상장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들에게 인적분할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주

가 되기 전에 투자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은 있지만 주권상장법인의 회사 분할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과정 등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회사분할의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김병태 변호사 | TEL. 02 316 4038 | E-Mail. btkim@shinkim.com |
| ● 서태용 변호사 | TEL. 02 316 4096 | E-Mail. tyseo@shinkim.com |
| ● 강지원 변호사 | TEL. 02 316 4253 | E-Mail. jwkang@shinkim.com |